

#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

|          |   |
|----------|---|
| 의안<br>번호 | 5 |
|----------|---|

제출일자 : 2002. 1. 30  
제출자 : 사하구청장

## 1. 제안이유

각종 제증명의 수수료 징수방법에 있어 수입증지 요금계기와 무인민원 증명발급기에 의거 현금 또는 전자화폐 수단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려는 것임

## 2. 주요골자

- 가. 제증명의 수수료를 수입증지 요금계기에 의하여 징수할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(안 제6조제2항)
- 나.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시스템의 도입에 따라 그에 따른 수수료를 현금 또는 전자화폐수단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함(안 제6조제3항)
- 다. 기타 법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함(안 제8조제1항 제1호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의2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- 다. 입법예고 : 2002. 1.10 ~1.29(주민제출의견 없음)

##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

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며,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부산광역시사하구수입증지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수입증지요금제기에 의하여 제증명등의 수수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.

③부산광역시사하구수입증지조례 제5조의3의 규정에 의거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전자화폐수단으로 징수할 수 있다.

제8조제1항제1호중 “생활보호법 제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거택보호대상자 및 자활보호대상자로 선정된 자”를 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”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| 현  | 개 정 안   |
|--|---|
| <p>제6조(징수방법)수수료는 구수입증지를 제증명등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, 입찰 참가신청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. 다만, 제증명등의 구술 신청 등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.</p> <p>&lt;신 설&gt;</p><br><br><p>&lt;신 설&gt;</p><br><br><p>제8조(수수료의 감면등)① (생 략)</p> <p>1. 생활보호법 제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거택보호대상자 및 자활보호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</p> <p>2. ~ 4. (생 략)</p> <p>② (생 략)</p> | <p>제6조(징수방법) ①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-----</p> <p>②부산광역시사하구수입증지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수입증지 요금제기에 의하여 제증명등의 수수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.</p> <p>③부산광역시사하구수입증지조례 제5조의3의 규정에 의거 무인민원증명 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전자화폐 수단으로 징수할 수 있다.</p><br><br><p>제8조(수수료의 감면등)① (현행과같음)</p> <p>1.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-----<br/>-----</p> <p>2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|